

1. 개정이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정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23.5.19.공포, 2023.11.20.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할 손실상당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일부 업종의 사용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보험료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서류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훈신분증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용어 정비(안 제7조)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4조 제2항)
- 다.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생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5항, 제58조제4항,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

- 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용어 정비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대한 급여 확대(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 마. 보험료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받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 별지 제39호서식)
- 바.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할 손실상당액을 산정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60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 사. 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를 위한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까지)
- 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종료('18.1~'22.6.)에 따라 건강보험 신청양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란을 삭제함(안 별지 제27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 중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진행중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가목 중 “요양비 명세서”를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으로 한다)”로,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를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의 제출을 생략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요양비처방전

- 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요양비 지급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

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전송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26조제2항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의2호 중 “전동스쿠터용”을 “의료용스쿠터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같은 조 제5항제5호 및 같은 호 다목 중 “전동스쿠터용”을 “의료용스쿠터용”으로 한다.

제49조제1항본문 중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한 납입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를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고지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용신고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
3. 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

제49조제2항단서 중 “납입고지를”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로 한다.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한”은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2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5항제1호”를 “제23조제5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 및 지급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정등의 제목 및 조정등의 대상이 된 약제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주소
3.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또는 지급 방법 및 그 기한에 관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제5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②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이유,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예정일자가 기재된 문서

④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징수·지급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다목, 아목 및 차목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급여평가”를 각각 “제품평가”로 하며, 같은 호 자목 1) 중 “전동스쿠터용”을 “의료용스쿠터용”으로, “전동스쿠터”를 “의

료용스쿠터”로 한다.

별표 7 제2호아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군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나군

별표 7 제2호아목13)의 유형란, 용도란의 “전동스쿠터(moped)”를 “의료용스쿠터”로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한다.

별표 7 제2호자목1)의 유형란, 용도란의 “전동스쿠터용”을 “의료용스쿠터용”으로,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중 “급여평가”를 각각 “제품평가”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까지, 제21호 서식, 제22호의2 서식, 제24호 서식, 제27호 서식, 제3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국가유공자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요양비 관련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58조 및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19의5 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별표 7 제2호아목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아목1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조의2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및 후방보행차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제품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절차, **제품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및 의안(義眼)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조기기는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보조기기의 소모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해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바.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사.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아.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
- 2)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다리 의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

카.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1) 머리 및 목 지지대
-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3) 다리 및 발 지지대

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

가 검수확인한 경우

-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조기기의 분류 및 유형 등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 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 용	미관형
			기능형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9 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 용	미관형
			기능형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 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기능형
	7) 손 의지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미관형

	(Partial hand prostheses)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나. 다리 의지	1) 골반 의지 (Trans - pelvic prosthese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실리콘형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일반형
			실리콘형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실리콘형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실리콘형
	7) 발 의지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실리콘형

	(Foot prostheses)		
다. 팔 보조기	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 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가)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사용	일반형
		나)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각도조절형
	3)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라. 척추 보조기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가)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나)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다)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재킷형 (Cervical jacket)
	2) 등 - 허리 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	나이트-

	(Thoraco-lumbar orthoses)	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윌리엄식 (William type)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TLSO식 재킷 (Jacket)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코르셋 (Corset)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바. 다리 보조기	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양쪽
	2)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한쪽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가)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나)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레녹스힐 (Lenox-hill)

		다)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 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 용	인대 손상용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가)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 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뻘 또는 발목관절의 안 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체중 부하식
		나) 발목관절 없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 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 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 우 사용	일체형 (플라스틱)
		다)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 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 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관절형 (플라스틱)
			관절형 (금속형)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라)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 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크렌자크식 (금속형)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 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나)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 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아. 그 밖의 보조기 기	1) 수동휠체어	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 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나)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 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 용	활동형
		다)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 조를 위한 보조기구	
	3) 목발 (Crutches)		
	4) 의안 (Ocular prostheses)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 조기구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 조를 위한 보조기구	
	6) 콘택트렌즈		
	7) 돋보기		
	8) 망원경		
	9) 흰지팡이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 기구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 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	가군

	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나) 군
13) 의료용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4) 자세보조용구 (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	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다)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라)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15) 욕창예방방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	

		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	
	18) 보행차		
	가) 전방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나)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자. 소모품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2) 넓적다리 의지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실리콘형
	3) 무릎관절 의지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실리콘형
	4) 종아리 의지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실리콘형
	5) 발목 의지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실리콘형
	6) 넓적다리 의지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7) 무릎관절 의지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8) 종아리 의지실리콘라이너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9) 발목 의지실리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콘라이너		
--	------	--	--

3.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한 보조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4. 그 밖의 사항

가.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내구연한은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

1.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조정등	산정 기준
가. 법 제101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요양급여대상 제외의 직권 조정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3)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범위 축소의 직권 조정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나. 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의 직권 조정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 -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요양급여대상 제외의 직권 조정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3)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범위 축소의 직권 조정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 -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비고

1. 위 표에서 “산정기간”이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산정기간
가목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조정등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나목의 경우	조정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 2)부터 3)까지 및 나목 2)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 “100분의 40”을 같음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 (매출원가율)

3. “매출원가율”은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상 조정등의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기업경영분석상 조정등의 직전년도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산업(종합)”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비율로 한다.

4. 위 표의 나목 2) 및 3)에서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조정등의 직전 3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 \times (산정기간)$ ※ 다만,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등이 있었던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등이 있었던 날까지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법 제101조의2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영 제7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번호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진료 구분		입원[] 외래[]		
④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 전자처방 전등록번호	. . .	⑤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 . .부터 ()일간		⑥ 상병명	상병코드		
	NB							
⑦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길[] 6. 그 밖의 장소[]							
⑧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구분	구입금액 (판매금액)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수	개수/일	구분	승인번호	작성·거래 일자	합계금액
⑨ 복막관류액	원				⑫ 전자세금계산서			
⑩ 복막투석소모성재료	원	/	일					
⑪ 자기모노소모성재료	원	/	일	개	⑬ 현금영수증			
⑭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준요양기관 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지급의뢰일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⑮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23 –

(뒤쪽)

첨부서류	1. 요양비 항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다목의 경우로서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1)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복막관류액 또는 복막투석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나)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나)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라.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요양비등수급계약(압류방지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②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명칭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 ③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출산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④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출산, 복막투석 및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예시: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21. 7. 1.부터 (15)일간)
- ⑥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⑦ 해당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⑧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 ⑨ 구입한 복막관류액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⑩ 구입한 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고, 구입업체인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수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⑪ 구입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고, 구입업체인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⑫ ⑬ 승인번호란, 작성·거래일자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⑭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약(압류방지 계약): 진료받은 사람 본인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준요양기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⑮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구서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령 수령인
---------------	---	---------------------	---	--------------------	---	--------------------	---	-----------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앞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상병	명칭 상병코드
④ 진료 구분	입원[] 외래[]	⑤ 요양비처방전 발행일/전자처방전 등록번호	H0	⑥ 요양비 청구기간 (월 단위)	. . . ~ . . . 까지
⑦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⑧ 산소치료서비스	준요양기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산소발생기 모델명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⑨ 계약금액 (월 대여금액)	원	구분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합계금액
		⑩ 전자세금계산서			
		⑪ 현금영수증			
⑫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준요양기관 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⑬ 그 밖의 확인 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가정용		호흡기장애 정도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휴대용			
지급의뢰일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⑭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산소치료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의사 요양비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요양비등수급계약(압류방지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② · ③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 ④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
- ⑤ 의사가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21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21. 7. 1. ~ 2021. 7. 31.>
- ⑦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 ⑧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산소발생기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 (a~f: 제조년·월 6자리, g~u: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
- ⑨ 계약금액은 대여한 산소치료기의 실제 대여금액을 적습니다. 계약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⑩ · ⑪ 승인번호란, 작성·거래일자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⑫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약(압류방지 계약):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⑬ 그 밖의 확인사항은공단 직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요양비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로 청구하며, 12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용은 최대 12차까지 기재 가능하며, 휴대용(월 2회 청구 가능)은 최대 24차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호흡기장애 정도에 “○” 표시를 합니다.
 - 호흡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으로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⑭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 .		④ 청구일수 일		
⑤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⑥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판매금액)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승인번호		작성·거래 일자	합계금액
		[] 혈당측정검사지		원		/		⑦ 전자세금 계산서				
		[] 채혈침		원		/						
		[] 인슐린 주사기		원		/						
		[] 인슐린 주사바늘		원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원		/		⑧ 현금영수증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원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원		/						
⑨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준요양기관 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⑩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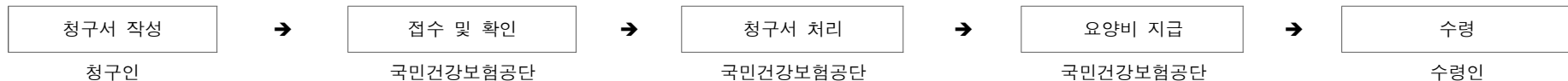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4.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②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 ③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청구일수를 적습니다.
- ⑤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 ⑥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 표시를 하고, 구입한 당뇨소모성재료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고,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⑦·⑧ 승인번호란, 작성·거래일자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⑨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⑩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③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 .		④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까지	
⑤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⑥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및 청구내역	종류	구입금액 (판매금액)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승인번호	작성·거래 일자	합계금액
	[] 연속혈당측정기	원		⑦ 전자세금 계산서			
	[] 인슐린자동주입기	원		⑧ 현금영수증			
⑨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준요양기관 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⑩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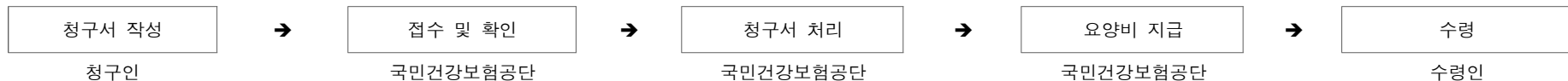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②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 ③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20년 1월 15일에 구입하고 2021년 1월 14일까지 사용한 경우 → 2020.1. ~ 2021.1.)
- ⑤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 ⑥ 구입한 당뇨병 관리기기의 종류에 “√” 표시를 하고, 구입금액,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당뇨병 관리기기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⑦·⑧ 승인번호란, 작성·거래일자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⑨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등)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⑩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3. 00. 00.>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해당하는 경우 등록번호 기재)		등록번호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상병명		③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⑤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⑥ 요양처방전 발행일/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⑦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청구기간		~		
⑧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준요양기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모델명		관리번호			
⑨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⑩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계약금액(월 대여금액)	[] 혼합형 [] 압력형 [] 볼륨형		원		구분	승인번호	작성·거래 일자	합계금액
⑪ 기본소모품(공통)	[] 1 세트 [] 2 세트		원		⑬ 전자세금 계산서			
⑫ 소모품 구입 금액(판매금액) (가, 나 중 하나 선택)	선택소모 품 가	[] 일반 일체형 커넥터	[] 1 개 [] 2 개	원	⑭ 현금영수증			
		[] 일반·실리콘 튜브 연결형 커넥터	[] 1 세트 [] 2 세트	원				
	선택소모 품 나	[] 코마스크(Nasal, Pillow Mask)	[] 겔	원				
		[] 코입마스크(Facial Mask)	[] 실리콘	원				
⑮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준요양기관 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⑯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5.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 1부.(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②③⑤ 상병명(주된 상병)과 상병코드를 및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④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
- ⑥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⑦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청구기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요양비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달에 이어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21년 2월 21일부터 진료인 경우 → 1차 청구: 2021. 2. 21. ~ 2021. 2. 28., 2차 청구: 2021. 3. 1. ~ 2021. 3. 31., ..., 마지막 청구 시: 2021. 8. 1. ~ 2021. 8. 20.>
- ⑧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a(㉠)b(㉡)c(㉢)d(㉣)e(㉤)f(㉥)g(㉦)h(㉧)i(㉨)j(㉩)k(㉪)l(㉫)m(㉬)n(㉭)o(㉮)p(㉯)q(㉰)r(㉱)s(㉲)t(㉳)u → (a~f): 제조년·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 ⑨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 ⑩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환기타입에 “√” 표시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대여금액은 실제 기기 월 대여금액을 적되,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⑪ 기본소모품은 튜브, 필터 및 가슴기물통으로 구성됩니다. 1세트는 튜브 1개, 필터 4개, 가슴기물통 1개이며 2세트는 튜브 2개, 필터 4개, 가슴기물통 1개입니다.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하고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구입한 소모품의 실제 구입금액을 적어야 하며,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⑫ 선택소모품 ㉠과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을 선택한 경우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의 종류(일반일체형, 일반·실리콘 튜브 연결형)와 수량을 선택하여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커넥터는 월 최대 2세트까지 선택가능하며 교차선택 가능합니다. ㉣을 선택한 경우 해당 종류와 재질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봉합술로 선택소모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⑬·⑭ 승인번호란,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⑮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⑯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및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구서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령 수령인
---------------	---	---------------------	---	--------------------	---	--------------------	---	-----------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상병	명칭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입원 []외래	⑤요양비처방전 발행일/전자처방전 등록번호	PA	⑥ 청구기간	~		
⑦ 양압기	준요양기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모델명		관리번호		
⑧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⑨ 기기종류 및 계약금액 (월 대여금액)	[] 지속형(CPAP) [] 자동형(APAP) [] 이중형(BiPAP)	원	구분	승인번호	작성·거래 일자	합계금액	
			⑪ 전자세금 계산서				
⑩ 소모품(마스크)종 류 및 구입금액 (판매금액)	[] 코형(Nasal Mask) [] 콧구멍형(Pillow Mask) [] 안면형(Facial Mask)	원	⑫ 현금영수증				
⑬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준요양기관 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⑭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양압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②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 ③ 주된 상병의 상병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 ④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
- ⑤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고,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청구기간을 적습니다.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요양비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 달에 이어 양압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21년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인 경우 → 1차 청구: 2021. 2. 21. ~ 2021. 2. 28., 2차 청구: 2021. 3. 1. ~ 2021. 3. 31., …, 마지막 청구 시 : 2021. 8. 1. ~ 2021. 8. 20.)
- ⑦ 양압기를 대여한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해당 업소에서 대여한 양압기의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a①b②c③d④e⑤f⑥g⑦h⑧i⑨j⑩k⑪l⑫m⑬n⑭o⑰p⑱r⑳s㉑t㉒ → (a~f): 제조년·월 6자리, g~t: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 ⑧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 ⑨ 양압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기기종류에 “√” 표시를 하고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계약금액은 실제 기기 월 대여금액을 적는데,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⑩ 양압기의 소모품(마스크)종류 중 해당 구분에 “√” 표시하고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구입한 소모품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⑪·⑫ 승인번호란, 작성·거래일자인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⑬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⑭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급여를 받을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장애명	장애 정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② 보조기기 (제품정보)	명칭	구입일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일
	제품제조번호	표준코드	

③ 급여를 받을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판매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보조기기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급여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를 받을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④ 구입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	

⑤ 기준액	⑥ 고시금액	⑦ 실구입(판매)금액 (⑧+⑨)	⑧ 본인부담액	⑨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⑩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조기기 판매업자 계좌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압류방지 계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보조기기 급여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 지급 여부·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5 - 급여를 받을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보조기기 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보조기기 품목	첨부서류
■ 활동형 수동휠체어 ■ 틸팅형 수동휠체어 ■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이동식전동리프트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금 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세보조용구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금 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팡이 ■ 목발 ■ 현지팡이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금 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일반형 수동휠체어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전·후방보행차 ■ 돈보기 ■ 망원경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및 해당 검사 관련 서류 각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전·후방보행차만 해당) 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금 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의 보조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및 해당 검사 관련 서류 각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일반형 수동휠체어, 보청기만 해당) 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금 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 또는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자인 경우, 지팡이·목발 또는 현지팡이를 판매한 경우 및 보조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기 수리업자(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

3. 보조기기 급여 수령계좌가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인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부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①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소모품 포함)·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기기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 ③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④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됩니다.(해당 기관에서 지급이 불가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 ① 보조기기를 구입한 사람: 보조기기를 구입한 사람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② 보조기기(제품정보): 구입한 보조기기의 명칭, 보조기기를 구입한 연월일,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 연월일, 제품제조번호 및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 제품제조번호와 표준코드는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③ 급여를 받을 사람 외 청구인: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 또는 판매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가족·판매업자 정보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 가족의 범위: 급여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를 받을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④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미등록 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적습니다.
- ⑤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라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보청기의 경우 후기적합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에는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 ⑥ 고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⑦ 실구입(판매)금액: 구입한 보조기기의 실제 구입(판매)금액을 적고, 자세보조용구는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실구입(판매)금액을 적습니다. 실구입(판매)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⑧ 본인부담액: 급여를 받을 사람의 부담액을 적습니다. 실구입(판매)금액이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실구입(판매)금액이 기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구입(판매)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실구입(판매)금액이 고시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시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세보조용구는 실구입(판매)금액을 적습니다.
- ⑨ 청구금액: ⑤, ⑥ 및 ⑦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1)·2)에 해당하는 건강 대상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 **가군**(기준액 2,36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과 ⑨ 청구금액란에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 90%인 1,80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예시 2> **의료용스쿠터**(기준액 1,92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1,920,000원의 10%인 192,000원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인 8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272,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1,920,000원의 90%인 1,728,000원을 적습니다.
<예시 3> 개인용 음성증폭기(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10%인 50,000원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인 5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100,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90%인 450,000원을 적습니다.
- ⑩ 수령계좌: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
 - 보조기기 판매업자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이나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이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급여를 직접 수령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⑪ 청구인은 급여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를 받을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이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서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장애인 등록 전(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정 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③ 처방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 일반형 [] 활동형 [] 틸팅형 [] 리클라이닝형
	[] 전동보조기기	[] 가군 전동휠체어 [] 나군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④ 일반상태

수동 휠체어	구분		일반상태		해당 여부
	공통사항		의지・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하기 어렵다.		[]
	활동형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하다.		[]
가군 전동 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장애유형		일반상태		해당 여부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공통사항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내부기관 중복장애가 있다.		[]
		하지절단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다.		[]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관절・기능・변형 등	하지관절 장애, 하지기능・척추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및 변형 등의 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척수	완전손상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다.
		불완전손상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뇌병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심장・호흡기 장애	공통사항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호흡기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한다.		[]
나군 전동 휠체어	지체・뇌병변장애	가군 전동휠체어 대상자로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	
		수정바델지수 항목 중 화장실 이용, 대・소변 관리의 점수가 5점 이하이다.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		[]	
		의사의 평가 및 소견 결과 나군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		[]	
		방광 관리를 위해 카테터 삽입을 이용하거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	
		증가된 근긴장도 또는 떨림을 관리하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필요하다.		[]	

뒤쪽에 작성란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⑤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 쿠터만 해당 합니다)	구분		검사 결과	
	공통 사항	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인지 기능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점
		팔 기능	맨손근력 검사	() 급
	심장 기능		운동부하 검사	() METs
	심폐 기능	폐 기능 검사(FEV ₁ , DLco)		() %
		동맥혈가스검사(산소분압)		() mmHg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간 처방해야 합니다.
※ 팔에 기능장애가 있어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고, 팔에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라도 내부기관 중복장애(간질장애를 제외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및 요루·장루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용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장애인 등록 전"의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간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보조기기(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 일반상태: 보조기기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팔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기재합니다.
※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그 밖의 사유로 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품목 신청에 한정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급여를 받을 사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 보조기기명				
입원(입소) 현황	[] 요양기관 입원 (입원일:)			
	[] 장기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 현재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우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및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서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대상 여부 결정 및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정통보서 수령 (보조기기 구입 후 급여비 지급 신청) 신청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보조기기 품목		
결정사항	1. 급여 대상에 해당함	2.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제출(첨부)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①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으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접수 및 확인



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수령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첨부서류 (임의계속 가입의 경우만 제출)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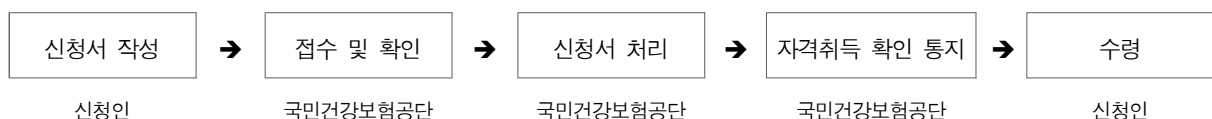
유의 사항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이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재취업하고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 당월부터 적용되며, 신청인의 자격 변동 시 자동 해지 처리됩니다.
- 임의계속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평생(전화)계좌. 법인계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작성 방법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가입“에, 탈퇴인 경우 “[]탈퇴“에 “√“표시합니다.
-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 ⑧·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 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 ----- ----- ----- ----- ----- ----- -----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u>국가유공자증</u> ,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 ----- ----- ----- ----- ----- <u>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생략)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3조(요양비) ①·② (생 략)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사본 1부

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요양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가.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으로 한다)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생략)

2. ~ 7.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의 제출을 생략한다.

1.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요양비 지급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송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 설 >

< 신 설 >

나.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요양비처방전

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요양비 지급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송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

2.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같
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
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⑥ ~ ⑨ (생략)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생략)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급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용스쿠터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제4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1부. 다만,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
팡이 · 목발 · 흰지팡이 또는 보
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하
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
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 ·
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
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 — ●

[illegible]

1의2. -----

의료용스쿠터용 -----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생략)

③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1. ~ 4. (생략)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

-----.

3. (현행과 같음)

③ -----

---의료용스쿠터-----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의료용스쿠터용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다. 보조기기를 제조 · 수입한 자로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 품 중 <u>전동휠체어 및 전동스 쿠터용</u> 전지를 판매한 경우 ⑥ ~ ⑦ (생 략)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u>의료용스 쿠터용</u>-----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 <u>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한 납입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 신청·변 경·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29호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 규·변경·해지 신청서를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 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적용신 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 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u> <신 설>	제49조(납입고지서 등의 전자고지 등) ① <u>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 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및 독 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u> ----- ----- ----- -----. <u>다음</u> <u>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u> <u>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u> <u>는 전자고지 서비스</u> ----- -----. 1. <u>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 용신고</u> 2. <u>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 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 고</u> 3. <u>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u>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 ③ (생략)

④ **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제23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제출을 생
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
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② -----

----- . -----

-----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제출한 서류와 제2
3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2호에
서 정한 -----.

1. -----
-----제23조
제5항제1호가목-----

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

2. (생략)

⑤ (생략)

< 신 설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절차 등) ① 공
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
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정등의 제목 및 조정등의
대상이 된 약제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
를 말한다) 및 주소

3.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
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또
는 지급 방법 및 그 기한에 관
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의 처리방법

6. 제5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②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

견제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
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
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
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등에
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문서를 송부하여야 한
다.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는 경우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는 경우 : 지급이유,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예정일자가
기재된 문서

④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
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
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
조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가산

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징수·지급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